

인권침해 구제지침 제정(안)

제정 2021. 0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7조에 따라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차별하는 모든 인권침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고인에게 특정된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구제절차의 처리

제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① 신고인은 별지1호의 서식 또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전담부서, 감사부서 등 관련부서는 사안의 처리 및 조사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에서는 진정의 유형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기타 인권침해로 분류하여 인권침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담 실시,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제척) 접수된 신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척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상급기관 및 기구의 확정판결 등에 반하는 경우 등

제6조(사건의 조사)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에 대하여 그 침해사실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인권전담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결과서는 인권침해 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의에 반영한다.

제3장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단은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제도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권주관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 이내의 내부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인권주관 부서장을 제외한 인권경영위원은 구제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외부위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수, 변호사, 노무사,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2.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기타 인권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④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제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 또는 신고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신고인이 구제위원회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신고사건의 심의 및 구제

제9조(위원회 심의) ①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구제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구제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전담부서에 보강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심의는 보강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제10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심의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구제절차 제척의 이의제기) 신고의 제척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의 조정에 따른 이의제기)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이의 신청으로 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해당 사안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된 것으로 본다.
3. (최종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양 당사자는 인권침해 심의의결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가 징계권고의 의결을 하고 처리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한다.

제5장 비밀유지 및 가·피해자 조치

제1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인권경영담당,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 금지) ①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피해자 등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보호휴가, 배치전환 등의 분리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지원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14조(가해자 조치)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및 상담 등을 요구한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는 이행결과를 인권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침해 예방활동) 공단은 임·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소통 채널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사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 내용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1. 신고의 개요
2. 조사방법 및 조사경과
3. 신고의 내용(신고인의 주장내용)
4. 조사결과(증거내용 등 포함)
5. 검토의견
6. 기타사항

상기와 같이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대구환경공단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의 결 서

진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직장괴롭힘 <input type="checkbox"/> 갑질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진 정 인		피진정인	
신청일자		신청경로	대면 () , 이메일 () , 익명신고시스템() , 기타()
<p>1. 주문 :</p> <p>2. 제안사유 :</p> <p>3. 의결사항 :</p> <p>첨부 : 회의록</p>			
<p>인권구제지침 제10조에 의거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위 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위 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위 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위 원 (인)</p>			

이의신청서

진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직장괴롭힘 <input type="checkbox"/> 갑질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진정인		피진정인	
이의신청일자			
<p>1. 이의신청 사유 및 요구사항 :</p> <p>2. 이의신청 근거 :</p> <p>첨부 : 증빙사항</p> <p>20 년 월 일</p> <p>성명 (인)</p>			